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152
----------	------

2021년 3월 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노승재 의원
- 나. 발의일자 : 2021년 2월 4일
- 다. 회부일자 : 2021년 2월 9일
- 라. 상정결과 : 제29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년 2월 26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노승재 의원)

가. 제안이유

- 일제 잔재 용어는 일제강점기에 국어에 유입된 것으로 우리 언어문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따라 서울시 및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함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제13조(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에 ‘일제 잔재 용어는 순화하여 사용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자 함.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국어기본법」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 (2)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 (3)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 동 개정조례안은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에 유입된 일제 잔재 용어가 올바른 국어 사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의 공문서 사용 시 일제 잔재 용어를 순화하여 사용하고자 우리 위원회 노승재 위원(더불어민주당, 송파1)이 발의 하였음.
- 2014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한글사용 실태 조사와 평가, 국어책임관 지정, 보조금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동 조례는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국어기본법」의 기본이념에 따라 제정된 것이며,

일제강점기에 유입된 일제 잔재 용어가 시민의 일상에서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어 이를 순화하여 올바른 국어 사용 문화를 정립하기 위한 동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이에 부합한 것으로 사료됨.

-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4년 공식적으로 일본식 용어 등에 대한 기획 정비를 실시하고, 2018년 ‘알기쉬운 법령팀’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령 속 일제 잔재 용어의 정비를 진행해왔으며,

2020년 국정감사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일제잔재 법률용어 청산을 위한 모임’을 구성하고 같은 해 현행 법률상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이나 쉬운 말로 바꾸는 개정안을 집단으로 발의¹⁾하는 등 일제 잔재 용어의 정비 및 순화는 국가적으로도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안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21년 1월 경기도가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경기도 국어 발전 시행계획’에 일제 잔재 용어 순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공문서 등의 사용 원칙에도 이를 실시할 것을 규정한 바 있음.

1) ‘일제잔재법률용어 청산을 위한 모임’은 2020년 12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총 121개의 법률을 대상으로 53개의 용어를 정비하겠다고 밝힘.

- 이러한 취지에 따라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대로 서울특별시 및 그 산하기관의 공문서에서 ‘일제 잔재 용어’를 순화하여 사용할 것을 규정한 것은 올바른 국어 사용 문화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현행 「국어기본법」에서 일제 잔재 용어의 정비 및 순화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에 따른 기준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²⁾으로 향후 동 조례의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등 전문가 집단의 논의 및 협의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소 결

- 동 개정조례안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국어기본법」의 기본이념에 따라

우리 삶에 깊숙이 침투해있는 ‘일제 잔재 용어’의 사용을 순화하여 올바른 국어 사용 문화를 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및 그 산하 공공기관의 공문서 사용부터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취지임.

2) 다만 법제처는 2014년부터 일본식 용어 37개를 선정하여 현재까지 279개 법령을 정비하였고, 2020년에는 국립국어원의 일본어투 순화자료집 등을 검토하여 일본식 용어 50개를 추가·선정하여 법령 정비를 추진 중.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1 : 법제처(2020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

9) 일본식 용어 정비 목록3)

용어	순화어	용어	순화어	용어	순화어
가도 (假道)	임시도로	구좌 (口座)	계좌	시말서 (始末書)	경위서
가료 (加療)	치료	납골당 (納骨堂)	봉안당	엽연초 (葉煙草)	잎담배
가식 (假植)	임시식재	녹비 (綠肥)	푼거름	일부인 (日附印)	날짜도장
갑상선 (甲狀腺)	갑상샘	미강 (米糠)	쌀겨	주말하다 (朱抹)	붉은 선으로 지우다
거래선 (去來先)	거래처	미拂 (未拂)	미지급	지득하다 (知得)	알게 되다
건정 (鍵錠)	잠금장치	부락 (部落)	마을	지참 (遲參)	지각
계기하다 (揭記)	규정하다	불입 (拂入)	납입	침목 (枕木)	받침목
견습 (見習)	수습	불하 (拂下)	매각	품신 (粟申)	건의
계리 (計理)	회계처리	사리 (砂利)	자갈	하구언 (河口堰)	하굿둑
곤색 (紺色)	감색	사찰 (査察)	조사	행선지 (行先地)	목적지
구배 (勾配)	경사	시건 (施鍵)	잠금		

※ 일본어 투 표현의 목록과 정비안

일본어 투 표현	정비안
관하여	~에 관하여, 문맥에 따라 '관하여'를 생략할 수 있다.
대하여	에게, 로 하여금, 대하여, 는, 를
명사 나열형	조사나 보조사를 추가한다, 명사를 형용사나 동사로 바꾼다.
에	과, 로, 를, 보다, 에게, 에서
요하는, 필요로 하는	~이 필요한
으로써	여, 여서, 으로서
의	이, 가, 을, 를, 인, 생략하는 경우
있어, 있어서	에서, 경우, 할 때, 하여, ~는 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하지 아니하는 한	경우 외에는, 경우가 아니면, 경우를 제외하고는
~에 한하여	~에서만, ~에 한정하여, ~으로만, ~에만
1회에 한하여	한 차례만, 한 번만, 한 차례에 한정하여
2회에 한하여	두 차례만, 두 번까지만, 두 차례에 한정하여, 두 번만
~에 한하다	~에 한정한다, ~로 한정한다, ~만 해당한다, ~만을 말한다, ~만(을) 할 수 있다

4) 일본식 외래어⁶⁾

용어	순화어	용어	순화어
가리 (kalium)	칼륨	미싱 (machine)	재봉틀
가성소다 (苛性소다)	수산화나트륨	엑기스 (extract)	추출물, 진액
레자 (leather)	인조 가죽		

붙임2 : 시민소통기획관 의원발의조례안 검토의견

의안번호
2152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주요내용	노승재의원 대표발의	2021. 2. 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추진경과	○ 2021. 2. 4. 노승재 의원 외 9명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부 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곳곳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 문화를 청산하고, 우리말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므로 본 개정조례안 취지에 동의하며, 쟁점사항 없음		
대응방안	○ 의원발의 조례안의 원안에 대해 동의하며, 쟁점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추진		
상 임 위 처리결과			
향 후 계획			
담당부서	시민소통담당관	팀장 권소현(☎2133-6407)	담당 이수진(☎2133-6440)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승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152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2월 04일
발 의 자 : 노승재 의원(1명)
찬 성 자 : 경만선, 김제리, 김춘례,
김태호, 문병훈, 박기열,
안광석, 오한아, 유정희
의원(9명)

1. 제안이유

- 일재잔재 용어는 일제강점기에 국어에 유입된 것으로, 우리 언어문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따라 서울시 및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제13조(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에 ‘일제 잔재 용어는 순화하여 사용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어기본법」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일제 잔재 용어는 순화하여 사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신·구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3조(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p> <p>① (생략)</p> <p>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서 작성한다.</p> <p>1. ~ 4. (생략)</p> <p><u><신설></u></p> <p>③ (생략)</p>	<p>제13조(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일제 잔재 용어는 순화하여 사용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